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14

발의연월일: 2021. 7. 29.

발 의 자:황운하·홍정민·민형배

이규민 • 이정문 • 오영환

송갑석 · 양정숙 · 김경만

강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매·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점검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 나. 안전공사는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 다.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라.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안 제14조제 3항,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원격점검"이란 점검장치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정기점검"을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을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 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 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점검대상 및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0. "원격점검"이란 점검장치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하는
	<u>것을 말한다.</u>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
	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
	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원격점
	검으로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1. • 2. (생략)

③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 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 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 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 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④ 제3항에 따른 동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
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
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u>⑤</u>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
1.•2. (현행과 같음)
<u>⑥</u> <u>정기점검 또는</u>
<u>⑥</u> <u>정기점검 또는</u> <u>원격점검</u>
원격점검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 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 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 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 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 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 (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이 중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u>⑧</u> <u>제5항</u>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 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⑥ ~ ⑨ (생 략)

①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신 설>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u>제9</u> <u>항</u>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u>.</u>
	<u>⑨</u> ~ <u>⑩</u> (현행 제6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u>③</u>
	<u>제5항, 제7항 및 제9항</u>
	부터 제12항
제	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운
	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
	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
	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
	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 ,,	① (현행과 같음)
	②
	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거
	용 시설물에 대하여 「부동산

<신 설>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 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 고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전 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 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대상 및 시기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현 행과 같음)

인정되는 경우

- 2. · 3. (생략)
- ③ ④ (생 략)
-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 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1. ~ 3. (생 략) <신 설>
 - 4. (생략)
 - ③ (생략)
-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제5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2. ~ 10.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
터의 설치・운영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1. <u>제12조제8항</u>
2. ~ 10.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 3. <u>제12조제4항</u>(제14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 12. (생략)
- ③ (생 략)

2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2조제7항</u>
4.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